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,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과장급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과에 상당하는 소속기관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 중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정원 1명(고위공무원단 1명) 및 운전기사 정원 1명(6급 상당 1명)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 31. ~ 6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1항 중 “하부조직”을 각각 “하부조직 및 소속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사회재난정책국·사회재난대응국”을 “사회재난대응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하부조직은”을 각각 “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은”으로 한다.

제64조의2제1항 중 “2024년 6월 30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구축”을 “구축·운영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8”을 “6”으로 하고, 별정직 계 “8”을 “6”으로 하며,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(고위공무원단) “2”를 “1”로,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(6급 상당) “2”를 “1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행정안전부 소속기관

조직	정원
지방자치인재개발원 1개 과	0명

별표 4의2 중 “2024년 6월 30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3조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① 「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4조제2항제5호, 제4조의2제2항제5호, 제8조의2제1항,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(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(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	제63조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하부 <u>조직 및 소속기관</u>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 <u>하부조직 및 소속기관</u> 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, 안전예방정책실에 두는 재난안전정보센터, 자연재난실에 두는 재난관리정책국·자연재난대응국, 사회재난실에 두는 <u>사회재난정책국·사회재난대응국</u> , 재난복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회재난대 응국</u> -----

구지원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.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,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제64조의2(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) 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을 둔다.

② (생략)

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차세대 지방재정·지방보조금 및 지방세·지방세외수입

-----.

-----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은 -----

-----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은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4조의2(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) ① -----

----- 2025년 12월 31일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.

1. -----

정보시스템 <u>구축</u>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·3. (생략) ④ ~ ⑥ (생략)	----- <u>구축·운영</u> ----- 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표(제60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8</u>	<u>6</u>	-2
별정직 계	<u>8</u>	<u>6</u>	-2
·	·	·	
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(고위공무원단)	<u>2</u>	<u>1</u>	-1
·	·	·	
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(6급 상당)	<u>2</u>	<u>1</u>	-1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8